

# 2013년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사업계획(안) 주요내용

## 1. 목적

-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취업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생에게 경력 및 진로 설계 차원의 글로벌 현장학습 기회를 제공
- 전공과 연계한 글로벌 현장학습으로 언어능력과 전공실무능력을 동시에 배양하여 글로벌 감각을 갖춘 핵심 인재로 양성
- 국제화 시대의 산업수요에 대처할 수 있는 국제감각과 능력을 겸비한 중견 산업인력 배출을 위한 국내외 취업 역량 강화

## 2. 사업 개요

- 예산 : 4,141백만원
- 파견계획 : 560명 내외
- 파견기간 : 4~6개월(16주 이상)
- 추진방식
  - 자유공모 : 개별 대학별 해외 파견기관 발굴을 통한 자체 프로그램 추진
  - 지정공모 : 협의회 주도의 파견분야 및 기관 발굴을 통한 프로그램 추진

〈지정공모 분야 및 기관〉

영역	분야	세부분야	인원	파견국가(협력기관)	비고
<b>취업연계 가능</b>	간호·보건	•간호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임상병리 •보건행정 •치기공	25	미국(올랜도아카데미)	
	교육 및 복지	•유아교육 •사회복지	10		
	예체능	•태권도 •헤어 •스킨케어 •네일아트	00	미국(블룸필드대학)	미용-\$30~40/일 견습비 지급
	경영 및 회계	•일반경영	4	인도(본빌대학)	
	호텔서비스	•호텔관광 •항공서비스 •조리 •식품영양	30	미국(올랜도아카데미), 말레이시아(세기대학)	
	공학	•IT •산업디자인 •건설/조선	13	인도(본빌대학)	

영역	분야	세부분야	인원	파견국가(협력기관)	비고	
취업역량강화	특화	자동차 및 기계	•자동차 및 기계	16	캐나다(툼슨리버스대학)	전공집중교육
	유급	호텔서비스 공학 등	•일반사무 •관광/호텔 •세일즈 •IT •정비	15	캐나다(애쉬튼대학)	6개월프로그램
	일반실습	간호.보건	•간호 •물리치료 •임상병리 •치기공	25	미국(블룸필드대학)	치기공-취업연계 가능
		호텔서비스	•호텔관광 •항공서비스 •조리	30	영국(본빌대학), 캐나다(애쉬튼대학) 말레이시아(버자야대학)	
		교육 및 복지	•유아교육 •사회복지	15	미국(블룸필드대학) 영국(본빌대학)	블룸필드대학 -현지취업기회모색
		일반경영	•일반행정 및 경영 •마케팅	5	영국(본빌대학), 캐나다(애쉬튼대학) 말레이시아(버자야대학)	
		공학 및 예체능	•IT •공학 •철도 및 기계 •멀티미디어 •방송 •헤어 •뷰티	12	영국(본빌대학), 캐나다(애쉬튼대학) 말레이시아(버자야대학) 영국(본빌대학)	

o 사업(대학) 참여 조건

-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산학협력단을 설립·운영 중인 전문대학
- 현장학습에 대한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개정 완료(20학점 내외 인정)
- 국고보조금의 30% 이상 대응투자
- 2013년도 정부 재정지원 제한대학 참여 불가
- 대학별 자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자유공모) 추진이 원칙(컨소시엄 가능)
- 참여 자격을 갖춘 재학생을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자 명단 제출

◆ 참여 학생 기본 지원 자격

- ①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로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복학예정자 포함)
- ②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③ 글로벌 현장학습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  
<언어별 공인어학성적 지원 자격>

언어	어학시험성적 종류 및 기준점수	비고
영어	TOEIC 550점 G-TELP 2등급 42점, OPIc NH 등급 토익 Speaking 레벨5(110점), TEPS 450점, ESPT 3급, PELT 3급, TOEFL(PBT 450점, CBT 137점, IBT 55점), TOSEL(A)397점, TESL 104점, IELT 4.5 이상	어학성적은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발급된 성적만으로 인정하며 해당 언어권 이외의 기타 국가 파견시 해당 어학 성적증명서 제출
중국어	新HSK3급, CPT 300점, BCT 2급 이상	
일본어	JPT 415, JLPT 신N4, 니켄 450점 이상	

- ④ 인성, 건강, 신상 등의 개인적인 문제가 없는 학생
- ⑤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자 지원 불가
  - 타 정부해외인턴사업 참가 학생 중복 참여 불가
  - 외국인 및 이중국적자 참여 불가

○ 현장학습 소요 경비 지원

- 국고 보조금 : 1인당 지원금 최대 750만원(과건지역별 차등 지원)

※ 항공료, 비자발급비, 인턴십관리운영비, 보험료, 현지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체재비(일부)로만 사용 가능

〈과건 지역별 국고지원금 지원기준(4개월)〉

(단위:천원)

구분	항공료	비자발급비	관리운영비 <sup>주1)</sup>	보험료	어학교육비	직무교육비 <sup>주2)</sup>	체재비(일부) <sup>주3)</sup>	계
영어권 중동 중남미 <sup>주4)</sup>	2,000	1,000	1,200	500	1,000	1,000	800	7,500
일본 아프리카 싱가포르/홍콩 <sup>주5)</sup>	900	600	1,200	400	900	1,200	800	6,000
중국 동남아권	700	300	900	300	600	500	700	4,000

※ 상기 표의 지원기준 용도 이외로 집행불가하되, 항목내 조정은 가능하며 정부 해외인턴사업 실행예산 편성지침의 소요경비 단가를 준용(붙임2)

※ 중동, 중남미·아프리카 등 신흥개발 국가 및 신규 발굴 국가의 경우 참여 독려를 위하여 예산을 고려해 국고지원금의 최대 20% 이내 추가 지원 검토(사업 관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주1) 현장학습 참여 학생과 산업체 관리 및 배정비 등 관리비용

주2) 산업체 배정 관련 실시되는 현지 직무 관련 교육비 등

주3) 체재비(일부)는 현지 숙박비, 식비 및 현지 교통비 일부

주4) 영어권은 미국, 캐나다, 영국, 유럽권, 오세아니아권, 중동, 중남미 등 포함

주5) 동남아권인 싱가포르와 홍콩의 경우 현지 물가를 고려하여 일본권으로 적용

- 대학 대응투자 : 국고보조금 30%이상 대응투자(의무사항)

- 학생 자비부담 : 학생 본인의 현지체재비 등 개인적 비용

※ 학생 자비부담 경비는 현지체재비 등 개인적 비용으로만 사용하며, 국고보조금의 20%를 넘지 않도록 함.

※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국고에서 자비부담 경비 추가 지원

〈저소득층 자비부담경비 지원 비율〉

구분	자비부담경비 지원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	100% 지원
차상위계층 및 소득 2분위	80% 지원
차차상위계층 및 소득 3분위	60% 지원

### 3. 사업 선정 및 평가

o 평가 시기 : 연1회(2월)

- 사업 선정 평가는 연1회만 실시하므로 2학기에 학생파견 예정인 대학의 경우라도 공고 시 사업신청서는 미리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선정 후, 학생 파견시기는 1차와 2차에 나누어 자율적으로 실시

※ 2차 파견의 경우 대학별 전체 선발가능 인원 20% 범위내에서 동일언어권에 한하여 명단 변경 가능

o 선정 방법

- 지정공모 : 지정공모 분야별 **면접** 실시

※ 지정공모 협력교육기관 및 산업체의 1차 서류평가(현장학습계획서) 통과자에 한하여 면접평가를 실시하여 파견 대상 학생 선발

※ 대학 사업신청서 평가결과 대학의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 면접평가에서 제외 가능

- 자유공모 : **신청학생 어학성적 분포 + 대학별 사업신청서 서면평가**

※ 대학에서 제출한 신청학생들의 어학성적 분포와 대학 사업신청서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선정 대학 및 선발 가능 인원 통보

⇒ 대학별 자체 학생 선발 계획에 따라 최초 신청학생을 대상으로 선발 가능 인원수 범위내에서 파견 대상자 선발

※ 선발가능인원 산정은 신청학생들의 언어권별 어학 성적 적용 기준표(붙임1)를 적용하여 계열별, 권역별 파견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

※ 대학 사업신청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별 선발가능인원 조정 및 사업 선정에서 탈락 가능

※ **신규 및 신홍 개발 국가 파견계획**의 경우 파견국 다변화 차원에서 우선 선정

※ 대학의 국제화 역량 강화 및 사업 참여 유도를 위하여 동 사업 최초 참여대학(소수 인원 파견 대학 포함)의 경우 우대 선정

※ **대학별 파견대상자 선발시** 단순 어학성적 평가만을 지양하고, 현지에서 현장 학습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언어능력을 포함한 인성 및 적성, 잠재력과 열정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발(면접평가, 포트폴리오 심사, 인적성검사 실시 등)하되, 저소득층(취업취약계층 포함) 및 국가전략분야, 취업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우대 선발 권장

⇒ 사업 신청시 파견학생 선발 평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사업대학별 신청서 평가 시 반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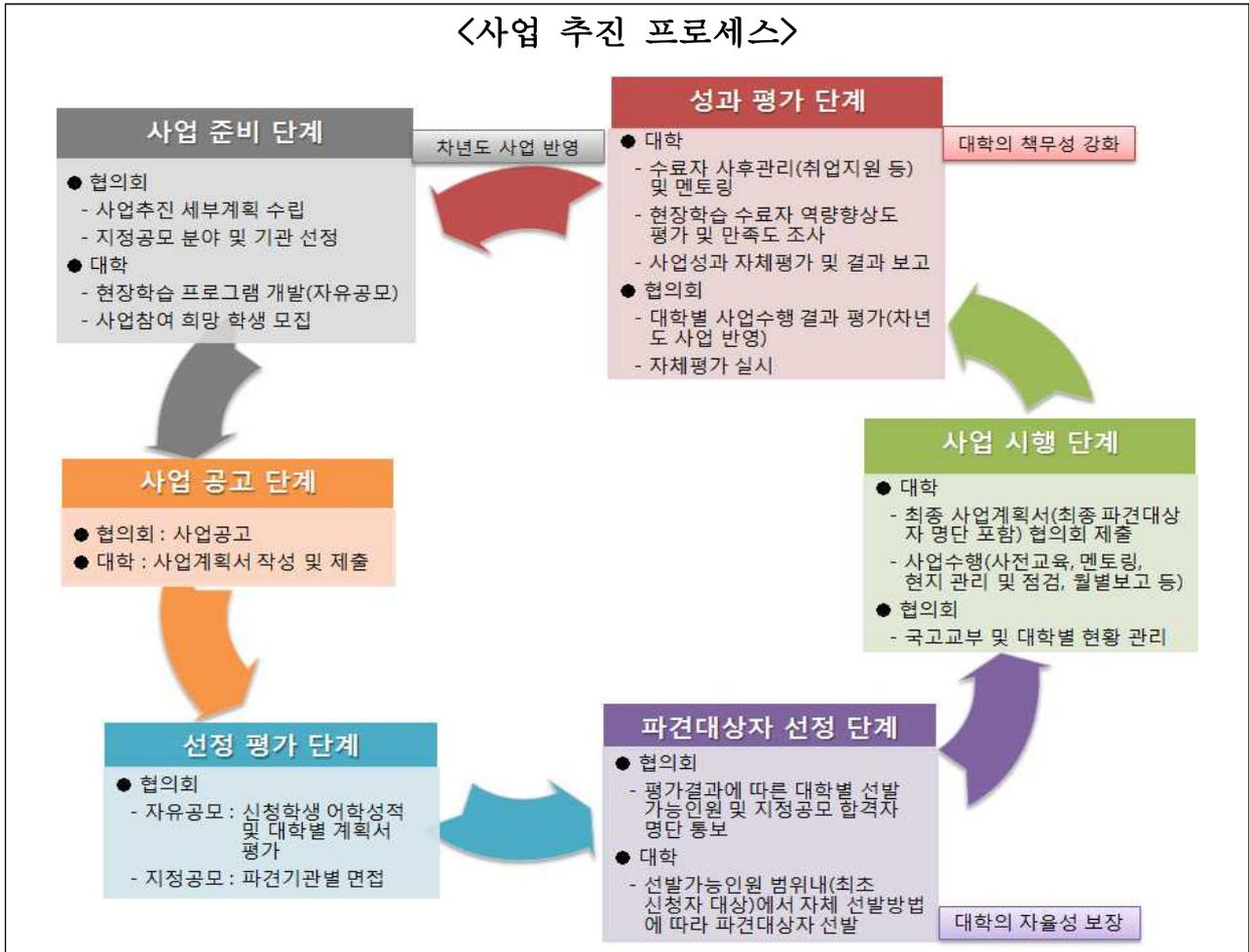


### 3. 성과 평가

- 대학별 전년도 사업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수행 실적을 평가하여 차년도 사업 선정 평가시 반영

※ 사업계획 대비 실제 수행 현황, 현장학습 수료 후 역량향상(어학, 전공능력 등), 국내외 취업실적, 사전·사후관리 현황(멘토링제), 중도포기 현황, 민원 접수 현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

- 협의회 자체평가 실시 : 정부해외인턴사업 성과평가 대비



### 4. 유의 사항

- 사업신청은 대학별 자체 프로그램(자유공모) 계획 신청이 원칙임. 단, 추가로 지정공모 분야 면접 희망자의 경우 희망분야 표기

- 지정공모의 경우 별도로 지정공모 기관의 직접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를 통하여 선발하고, 선발 확정 후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신청

※ 단, 지정공모 분야 면접에서 탈락한 경우 대학별 선발가능 인원 범위내에 포함하여 자유공모로 진행 가능

- 대학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계획이 사업신청서 평가항목으로 포함되므로 자

## 유공모 계획이 준비되어야 함

- 대학 사업신청서 평가결과 사업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된 경우(과락) 지정공모 신청자가 있더라도 지정공모 면접평가에서 제외 가능
- 2개 대학 이상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대학간 협약을 체결하여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주관대학에서 참여대학의 자료를 취합하여 신청
  - 참여대학 학생의 경우 소속대학에서 학점 인정과 대응투자 필수
- 사업 선정 평가는 연 1회(2월경)만 실시하며, 선정된 대학은 **최초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통보받은 **선발 가능 인원내에서 대학 자체 선발** 후 최종 파견대상자 명단을 최종 사업계획서와 함께 협의회에 제출
  - 학생 파견은 1학기 또는 2학기에 파견하거나 1, 2차로 나누어 자율적으로 파견 가능함. 단, 현장학습 종료시기가 12월말을 넘기지 않도록 일정을 고려하여 파견시기를 조정하고, 국가별 현장학습 수행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 받아 파견하도록 함.
  - 2학기(2차) 파견 시 전체 파견인원수의 20% 범위내에서 동일 언어권에 한하여 파견자 명단 변경이 가능(2학기 복학자 및 어학능력 향상자 배려 또는 해외파견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함)
- **국고보조금 교부** : 1,2차로 나누어 교부하되 2차 교부는 1차 파견실적을 고려
- 국외 및 국내 현장방문을 통하여 사업 및 학생 관리가 부실하거나 민원 사항이 다수 접수되는 경우, 또는 중도 포기(파견전 포기자 포함) 비율이 높은 경우 등 사업 운영이 부실한 대학은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또는 선정 평가 시 감점 검토

## 5. 추진 일정

- 사업 공고 및 접수 : 1.18(예정) ~ 2.1
  - ※ 사업공고일은 교과부 기본계획 통보 일정에 따르므로 18일 이후가 될 수도 있으나, 접수 마감일은 변동 없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신청학생 모집 및 신청서 작성 등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평가 : 2월중 ※ 지정공모 선발 면접 : 2.19 ~ 2.20
- 선정결과 통보 : 2월말
- 최종 사업 계획서 접수 : 3월초
- 파견자 발대식 및 오리엔테이션 및 : 3월말
- 국고교부 및 대학별 사업 수행 : 3월말 ~ 12월말

## ※ 2012-2013년 사업 비교

구 분	2012년	2013년						
사업명	■ 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	■ 좌동						
사업예산	■ 4,621백만원	■ 4,141백만원						
파견인원	■ 600여명 내외	■ 560여명 내외						
사업 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정공모(30%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분야 또는 협의회에서 전략적으로 추진</li> </ul> </li> <li>■ 자유공모(70%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별 대학별 파견 분야 및 기관 발굴을 통한 자체 프로그램 추진</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ul>						
사업(대학) 참여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점인정이 가능하도록 학칙개정 완료(20학점 내외 인정)</li> <li>■ 참여 자격을 갖춘 재학생 대상으로 사업 참여 희망자 명단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 학생 지원 자격 : 누계 평점 3.0/4.5(B0) 이상, 2학기 수료(예정)자이며 일정 기준 이상의 외국어 능력을 갖춘 학생(공인어학성적표 제출)</li> </ul> </li> <li>■ 국고보조금의 30% 이상 대응투자</li> <li>■ 정부 재정지원 제한 대학 참여 불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대학 자체 글로벌 현장학습 프로그램(자유공모) 추진 필수(컨소시엄 가능)</li> </ul>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사업계획서 타당성 검토(컨설팅)</li> <li>■ 파견자 선발 : 협의회 주도 직접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구술면접평가 및 공인외국어회화시험 성적순 선발</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별 사업신청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신청서 평가결과에 따라 대학별 선발가능 인원 조정 및 사업 선정에서 탈락 가능</li> <li>- 선정 평가는 연 1회만 실시</li> </ul> </li> <li>■ 파견자 선발 : 대학 자체 평가방법에 의한 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청자 어학성적 분포와 대학별 사업신청서 평가점수를 반영하여 선정 대학과 대학별 선발가능인원을 협의회에서 통보 후, 대학별 자체 계획에 의하여 선발 및 파견</li> <li>※ 단, 지정공모 분야는 별도 면접에 의해 선발</li> </ul> </li> </ul>						
파견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6개월 파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지적응 언어교육 1개월이상 실시 가능</li> <li>※ 4개월 이상시 국고추가 지원 없음</li> </ul> </li> </ul>	■ 좌동						
1인당 국고지원금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영어권</td> <td>일본어권</td> <td>중국,동남아권</td> </tr> <tr> <td>75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 : 소득수준에 따라 학생자비부담 경비 추가 지원</li> </ul>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동남아권	750만원	600만원	400만원	■ 교과부 기본계획에 따라 일부 변동 가능성 있음
영어권	일본어권	중국,동남아권						
750만원	600만원	400만원						
소요경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고지원금 : 현장학습에 소요되는 직접경비</li> <li>■ 교비 대응투자 : 국고지원금의 30%이상</li> <li>■ 학생자비부담 : 학생 본인의 현지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좌동</li> </ul>						
균형선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열 및 언어권, 권역별 고려 선발 비율 조정</li> <li>■ 저소득층 우대 선발(3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ul>						
학생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보고 실시</li> <li>■ 인 적성검사 실시</li> <li>■ 사전 및 사후관리교육프로그램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교육 40시간 이상 의무화 : 어학, 인성, 직무, 문화 교육 등 포함</li> <li>- 멘토링제 의무 : 파견전 교육상담, 파견후 취업연계지원</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좌동</li> <li>■ 좌동</li> <li>■ 좌동</li> </ul>						

# 붙임 1

## 선발가능인원 산정 언어별 어학성적 적용 기준표

### ▣ 영어 어학성적 기준표

※ 동 기준표는 서울대학교 TEPS 관리위원회, G-TELP KOREA, (주)크레듀 등의 어학점수 변환 테이블을 종합적으로 대조하여 작성하였으며, 2013년도 선발가능인원 산정시에만 적용함. 2014년 선발가능인원 산정시에는 TOEIC 성적만 반영할 예정임(사업참여를 위한 학생의 공인어학성적 기준은 변동 없음).

※ 영어 성적 적용 파견지역 : 영어 사용 국가 전체(유럽, 중동, 중남미, 아프리카, 동남아 포함)

기준점수 (TOEIC기준)	적용 어학 성적					
	TOEIC	TOEFL	G-TELP 1급	G-TELP 2급	TOEIC Speaking	OPIC
990	990	119-120	91			
985	985	118	90		200	
980	980	117	88-89			
975	975	116	87			
970	970		86	98-99	190	AL
965	965	115	85	97		
960	960	114	84			
955	955	113	83		180	
950	950	112	81-82	96		
945	945		80			
940	940	111	79	95		
935	935	110	78	94		
930	930	109	77			
925	925		76	93	170	
920	920	108	74-75	92		
915	915	107	73			
910	910		72	91		
905	905	106	71	90		
900	900	105	70	89		
895	895		69		160	IH
890	890	104	68	88		
885	885		66-67	87		
880	880	103	65			
875	875	102	64	86		
870	870		63	85		
865	865	101	62			
860	860	100	61	84	150	IM3
855	855		59-60	83		
850	850	99	58			
845	845	98	57	82		
840	840	97	56	81		
835	835		55			
830	830	96	54	80		
825	825	95	52-53	79		
820	820		51			
815	815	94	50	78		
810	810	93	49	77	140	IM2
805	805	92	48	76		
800	800		47			
795	795	91	45-46	75		
790	790		44	74		

기준점수 (TOEIC기준)	적용 어학 성적					
	TOEIC	TOEFL	G-TELP 1급	G-TELP 2급	TOEIC Speaking	OPIC
785	785	90	43			
780	780	89	42	73		
775	775			72		
770	770	88				
765	765	87		71		
760	760			70		
755	755	86				
750	750			69		
745	745	85		68		
740	740	84			130	IM1
735	735			67		
730	730	83				
725	725			66		
720	720	82				
715	715			65		
710	710	81		64		
705	705					
700	700	80		63		
695	695			62		
690	690	79				
685	685	78		60-61		
675	675					
670	670	77		59		
665	665			58	120	
660	660	76				
655	655			57		
650	650	75		56		
645	645					
640	640	74		55		
635	635	73		54		
630	630					
625	625	72		53		
620	620			52		
615	615	71				
610	610	70		51		
605	605			50		
600	600	69				
595	595	68		49	110	IL
590	590			48		
585	585					
580	580	67		47		
575	575			46		
570	570	66				
565	565			45		
560	560	65		44		
555	555	64				
550	550	63		42-43	100	NH

## ▣ 일본어 어학성적 기준표

※ 동 기준표는 선발가능인원 산정을 위하여 시사일본어사 JLPT 시험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기준점수 (JPT기준)	적용 어학 성적	
	JPT	JLPT
990	990	N1 180
960	960~	N1 170
930	930~	N1 160
900	900~	N1 150
870	870~	N1 140
840	840~	N1 130
810	810~	N1 120
780	780~	N1 110
750	750~	N1 100
749	749~	N2 180
735	735~	N2 170
720	720~	N2 160
710	710~	N2 150
700	700~	N2 140
690	690~	N2 130
680	680~	N2 120
670	670~	N2 110
660	660~	N2 100
650	650~	N2 90
649	649~	N3 180
630	630~	N3 175
620	620~	N3 165
600	600~	N3 155
575	575~	N3 145
560	560~	N3 135
545	545~	N3 125
530	530~	N3 115
515	515~	N3 105
500	500~	N3 95
499	499~	N4 180
480	480~	N4 170
470	470~	N4 160
460	460~	N4 150
450	450~	N4 140
440	440~	N4 130
430	430~	N4 120
420	420~	N4 110
410	410~	N4 100
400	400~	N4 90

## ▣ 중국어 어학성적 기준표

※ 동 기준표는 선발가능인원 산정을 위하여 시사중국어사 CPT 시험 자료를 참고로 작성하였음.

기준점수 (新HSK 기준)	적용 어학 성적	
	新HSK	CPT
6급 300	6급 300~	990~
6급 280	6급 280~	970~
6급 260	6급 260~	940~
6급 240	6급 240~	910~
6급 239	6급 239~	889~
6급 200	6급 200~	869~
6급 180	6급 180~	850~
5급 300	5급 300~	829~
5급 280	5급 280~	809~
5급 260	5급 260~	780~
5급 259	5급 259~	769~
5급 239	5급 239~	749~
5급 220	5급 220~	720~
5급 219	5급 219~	689~
5급 200	5급 200~	669~
5급 180	5급 180~	650~
4급 300	4급 300~	649~
4급 290	4급 290~	639~
4급 280	4급 280~	629~
4급 270	4급 270~	619~
4급 260	4급 260~	600~
4급 259	4급 259~	589~
4급 239	4급 239~	569~
4급 220	4급 220~	550~
4급 219	4급 219~	539~
4급 199	4급 199~	529~
4급 180	4급 180~	500~
3급 300	3급 300~	489~
3급 280	3급 280~	469~
3급 260	3급 260~	450~
3급 259	3급 259~	439~
3급 239	3급 239~	419~
3급 220	3급 220~	400~
3급 219	3급 219~	389~
3급 200	3급 200~	369~
3급 180	3급 180~	350~
2급 300	2급 300~	339~
2급 280	2급 280~	319~
2급 260	2급 260~	299~
2급 240	2급 240~	280~
2급 239	2급 239~	269~
2급 229	2급 229~	249~
2급 200	2급 200~	229~
2급 180	2급 180~	210~

## 붙임 2

## 2013년 정부해외인턴사업 실행예산 편성지침

※ 2013년 정부해외인턴사업 실행예산 편성지침 중 일부내용(주요 경비 단가 설정 부분)을 발췌한 것임.

### 기본방향

- 「'13년 정부해외인턴사업 기본계획」의 주요방향에 따라 추진과제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실행예산 편성
- '13년 세부사업간 소요경비의 지원기준 및 단가의 표준화를 유도하여 효과적 인턴활동 지원
  - 예산항목별 상하한선 제시하고, 그 범위에서 편성
  - 외화 기준으로 작성된 지원금 기준 환율은 1\$당 1,130원('13 예산단가)
  - 예산 편성항목 정형화하여 예산편성 타당성 및 사업간 비교
- '13년 정부의 예산안 편성방향에 따라 저소득층 및 취업취약계층의 참가 기회를 확대하고, 재정지원 규모 현실화

○ 정부해외인턴사업 주요 소요경비에 대한 합리적 단가설정(기재부 등 지적사항)을 위해, 지역별 소요경비 상세화 및 표준화

### 《체재비》

○ 편성기준

(단위 : 천원)

“가”급지	“나”급지	“다”급지	“라”급지
1,400	1,200	1,000	800

○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와 [별표4] 국외여비 지급표 제6호(별표 1의 제2호 나목)를 기준으로 적용하되, 파견기간별 감액 조정

※ 체류기간을 3개월 이하, 3~6개월 이하, 6~12개월 이하, 12개월 초과로 구분하여 각각 5~15%씩 감액 적용(초기 정착비용 감소에 따른 체재비 감소 효과 반영)

- “가” 급지는 참가자 선호지역이므로 대폭 감액 필요하며, 절감 예산을 중동 등 비 선호지역의 추가지원 재원 등으로 활용

- (체재비) 현지 숙박비, 식비 및 현지교통비, 공공요금 등
  - 국가 및 지역별 체재비 지원기준 세분화
  - 저소득층을 산출금액의 100% 지원하고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비율 감액 지원
  - 대학생과 대학원생 동일한 기준 적용

《항공료》

- 편성기준

(단위 : 천원)

국가	주요도시	왕복항공료	국가	주요도시	왕복항공료
중국	북경	500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3,000
일본	도쿄	300	러시아	모스크바	3,500
동남아	홍콩	700	영국	런던	2,500
호주	시드니	1,600	프랑스	파리	2,300
미국	뉴욕	2,000	독일	함부르크	1,650
미국	LA	1,700	바레인	바레인	2,000
브라질	쌍파울루	3,450	이집트	카이로	2,000

※ 항공료 지원기준 상하한선은 비·성수기를 감안 10% 가감

- GTR 기준으로 하되, 가급적 이코노미석 실제 항공료 적용
  - 지역별 국가별, 주요 도시별 항공료 지원기준 세분화
  - 실 소요경비를 지급하되, 단체 구입 등 절감방안 모색
  - 지원기준이 없는 국가나 도시는 인근 요금 가감 적용

《보험료》

- 편성기준

- KOICA 해외봉사단 해외여행보험 가입 기준 이상으로 보상 강화

<KOICA 해외봉사단 해외여행보험 가입 담보내역>

적용대상	담보금액	담보기간
해외사무소 직원 & 관리요원, 인턴직원	상해사망/휴유장해	보험기간 만료일로부터 180일까지
	상해의료비	
	국내 상해 입원	
	국내 상해외래/처방	
	질병사망	
	질병의료비	
	국내 질병 입원	
	국내 질병 외래/처방	
특별비용		

- 현지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없이 보험료 지원 단가를 현실화
  - 시행기관별 단체 보험 계약 등을 통하여 예산절감 모색
    - ※ 특히, 신흥지역 등 파견자에 대해서는 여행자 보험을 지양하고, 충분한 의료·사고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VISA 발급수수료》

- 편성기준

(단위 : 천원)

미국	영어권	일본	중국·동남아	호주·홍콩
2,000	1,000	600	300	100

※ 영어권은 캐나다, 영국, 유럽, 남미 등

- 일률적인 비자 발급수수료 지급을 지양하고, 주요 파견 지역별로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여 인턴 활동에 적합한 비자발급 지원
- 방문 목적(관광, 취업, 학업, 연수 등)과 체류기간에 따라 적법한 비자 종류 발급원칙 준수(관광 비자를 통한 파견 사례 지양)
  - 비자 발급비의 과소 계상으로 참가자 현지관리지원 미흡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시 가급적 실 소요액 반영

## 참고 1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공무원 여비 규정)

가. **가등급**: 도쿄, 뉴욕, 런던, 로스앤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파리, 홍콩

나. **나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셸,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기스공화국, 타이, 터키, 파키스탄
-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안티가 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3) 유럽주: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 체코, 폴란드
-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에티오피아, 요르단,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3) 유럽주: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기니,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알제리, 예멘, 이라크, 이란,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 적용

**참고 2****국외 여비 지급표**(공무원 여비 규정)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	60	실비(상한액: 471)	186
	나	60	실비(상한액: 422)	136
	다	60	실비(상한액: 233)	102
	라	60	실비(상한액: 200)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50	실비(상한액: 389)	160
	나	50	실비(상한액: 289)	117
	다	50	실비(상한액: 185)	87
	라	50	실비(상한액: 149)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40	실비(상한액: 282)	133
	나	40	실비(상한액: 207)	99
	다	40	실비(상한액: 139)	72
	라	40	실비(상한액: 100)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5	실비(상한액: 223)	107
	나	35	실비(상한액: 160)	78
	다	35	실비(상한액: 112)	58
	라	35	실비(상한액: 79)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30	실비(상한액: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91)	44
	라	30	실비(상한액: 75)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26	실비(상한액: 155)	67
	나	26	실비(상한액: 123)	49
	다	26	실비(상한액: 77)	37
	라	26	실비(상한액: 71)	30